



시 보



제1614호 2023. 10. 10.(화)

공 고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5
-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9
-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4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저출생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시책 근거 마련
- 중단된 지원정책 조항 삭제 및 현 실정에 맞게 전반적인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저출생 극복 및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재정지원 근거 마련(제3조)
 -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제3조 제3호)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재정지원(제3조 제5호)
 - 1인 가구 재정지원(제3조 제10호)
- 중단된 지원시책 삭제 및 현 실정에 맞게 전반적인 용어 정비
 -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 내용 삭제 등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6.(금) ~ 10. 27.(금) / 21일간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 (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7일까지 목포시장(청년인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청년인구과
- 제출 방법 : 우편, 팩스(061-270-8791), 직접방문 등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청년인구과(☎ 061-270-8469, FAX 270-8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포시의 인구증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의 직계존속)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입양아”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마친 입양아동을 말한다.
3. “영유아 보험가입 지원”이란 “시”가 셋째 이상의 자녀의 영유아 보험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아기주민등록증”이란 아기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내용을 적어 발급해 주는 증명서를 말한다.
5. “전입 유도 우수기관·기업”이란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임직원을 “시”로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인구증가정책의 추진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지원
2. 영·유아 보험가입 지원
3.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4. “시”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지원
5.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재정지원
6. 육아의 날 운영
7. 임산부의 날 운영

8.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및 홍보

9. 결혼축하 및 장려 지원

10. 1인가구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인구증가를 위해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3.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5. 아이 돌보미 지원

6. 보육료 지원

7.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확충

8.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9.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10. 입양가정 지원

11. 임산부 지원센터 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지급하지 않으며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한 달(月)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한 달(月)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4조(출산축하금 지원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의 대상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의 직계존속)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주소지에 출생·입양신고를 하는 가정으로 하며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의 입양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출생자의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유아 보험가입 지원” 대상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의 직계존속)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정이며, 전입자에 대해서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입양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관련 공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공휴일 제외)이내에 목포시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며, 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공휴일 제외)이내에 [별표]에 따라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한 후 지급한다.

⑥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지원 대상자 명단을 매월 말일까지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전출, 사망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전입신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에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시”에 2명 이상 전입한 세대
2. “시”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 중 “시”에 전입신고를 한 학생
3.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의 임직원으로 “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제7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치)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증가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청년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경제수산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인구증가 정책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전문가, 그 밖에 인구증가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협의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일기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의회 간사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인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중단)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 한 경우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내용 및 기준

구분	시책명	적용기준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출산장려 지 원 (제4조 관련)	출산축하금	제4조 제1항	1. 첫째아이 150만원 - 출생신고 시 일시금 지급 2. 둘째아이 250만원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다음 해 생일 달에 100만원 지급 3. 셋째아이 350만원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4. 넷째아이 450만원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매년생일 달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5. 다섯째아이 이상 550만원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 쌍태아는 순위별로 각각 지급											
	영·유아 보험가입지원	제4조 제3항	셋째 이상 자녀의 영·유아 보험료 일정액											
전입축하 지 원 (제6조 관련)	전입환영 기 념 품	제6조 제1호	목포사랑상품권 등 전입환영기념품 지급(1회 지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제6조 제2호	6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급(각 회차별 1회 지원) 1. (1회) 전입신고 시 20만원 지급 2. (2회) 전입신고 이후 1년 주소 유지 시 20만원 지급 3. (3회) 전입신고 이후 2년 주소 유지 시 20만원 지급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 전입지원금	제6조 제3호	전입지원금 : 목포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등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지급기준(전입 인원)</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5명 이상~10명 미만</td> <td>1,000</td> </tr> <tr> <td>10명 이상~20명 미만</td> <td>2,000</td> </tr> <tr> <td>20명 이상~30명 미만</td> <td>3,000</td> </tr> <tr> <td>30명 이상~40명 미만</td> <td>4,000</td> </tr> <tr> <td>40명 이상</td> <td>5,000</td> </tr> </tbody> </table>	지급기준(전입 인원)	지급액	5명 이상~10명 미만	1,000	10명 이상~20명 미만	2,000	20명 이상~30명 미만	3,000	30명 이상~40명 미만	4,000	40명 이상
지급기준(전입 인원)	지급액													
5명 이상~10명 미만	1,000													
10명 이상~20명 미만	2,000													
20명 이상~30명 미만	3,000													
30명 이상~40명 미만	4,000													
40명 이상	5,000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	----	-------------	--	--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출산자와의 관계
		본인			[]에 []아니오	
	배우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자체 서비스 (목포시)	[] 출산축하금 지원	순위 : 자녀 중 <input type="text"/> 째
	[] 영유아 보험가입 서비스(셋째 자녀 이상)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셋째 자녀 이상)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19세이하 자녀 3명이상)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2022.1.1. 이후 출생자)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국기초 []차상위 []한부모 []기타) [] 조제분유([]산모의 사망·질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기타)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회원명 : 생년월일 : 멤버십 번호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회원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BC카드(은행)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에 √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에 √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기업, NH농협, S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한)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6.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조례로 택시 기본차령을 2년 이내에서 더할 수 있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 3. 21.)
- 내연기관 자동차의 제작기술 발전 및 도로여건 개선 등 차령 제한에 대한 현실 반영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 2년 추가(안 제6조의2)
 - ※ 조례 개정과 별개로 기본차령 만료 전 차량검사 합격차량 1년씩 2회 차령 연장 가능
 - ※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시행일 기준 연장하여 운행중인 차량도 소급 적용

3.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개정 2023.3.21.)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 : 별도 예산조치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6. 입법예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26. [21일간]

7.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8.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6일까지 목포시장(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91),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처 : (58714)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061-270-3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에서 위임된 사항” 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차령) 택시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택시 차령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택시에도 적용한다.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0.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변경
 - 현행 : 2023년 12월 31일
 - 변경 : 2028년 12월 31일

3. 개정조례안 : 붙임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8. 예산사항 :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9.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0. ~ 2023. 10. 31. (21일간)

10.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1.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31일까지 목포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팩스(061-270-3676), 우편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사회복지과(☎061-270-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u>2028년 12월 31일로 한다.</u> ----- ----- -----.

[붙임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0.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요내용

-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
<부칙 제1조, 제2조>
 - 현행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변경 : 2024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 주차장법 제21조의 2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별도 예산조치 해당 없음

7.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0 ~ 10. 30.[21일간]

8.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30일까지 목포시장(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91),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교통행정과(☎061-270-8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호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3212호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5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9. 8. 27.>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④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1조에서 이동 <2008. 3. 28.>]

주차장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3. 31., 2012. 1. 17., 2018. 12. 18., 2020. 6. 9., 2021. 1. 12.>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설 2021. 1. 12.>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1. 12.>

[전문개정 2010. 3. 22.]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1994.01.13 조례 제1696호 제정

(전부개정) 1998.02.09 조례 제1902호

(일부개정) 2009.06.01 조례 제2561호

(일부개정) 2012.12.17 조례 제2825호 목포시 조례 불합리한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299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제3항

(일부개정) 2016.10.17 조례 제3056호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세법

(일부개정) 2018.12.17 조례 제321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교통권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개정 2009·6·1>

제3조 (세입)

①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6·1>

1.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관련)
2.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3.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 제1항 관련)
4.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관련)
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6.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
7. 자동차 검사미필등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관련)
8. 과징금(「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관련)
9.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11. 그 밖의 잡수입

②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9·6·1, 2013.12.23, 2016.10.17>

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개정 2009·6·1>

1. 교통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
5.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6.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용자
7.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8.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신설 2015.12.28.>
9. 그 밖의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12.23, 2015.12.28>

제5조 (적립금)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제4조제4호의 보조 또 용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제6조 (일시차입)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7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8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1 조25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2.12.17 조27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12.28. 조29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7. 조3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3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